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16

발의연월일: 2021. 11. 24.

발 의 자: 강선우·강병원·김수흥

김영배 · 남인순 · 양이원영

유정주 • 윤준병 • 이수진

임호선 · 조승래 · 허종식

홍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 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제60조의6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
	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
	<u>탁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u>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자에 대한 성교육 등)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
	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